

해사제조물책임의 국제사법적 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김진권*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for the Maritime Product Liability

Jin-Kwon Kim+

Key words : Shipbuilding product liability(선박제조물책임), International private law(국제사법), Jurisdiction(재판관할권), Governing law(준거법)

1. 서언

1999년 한국 조선 산업은 신조선 수주 부문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해, 그 이후 줄곧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해운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클락슨(Clarkson)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한국이 1,450만CGT, EU 850만CGT, 중국 700만CGT, 일본 620만CGT의 순으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주량은 세계 조선 수주량(3,840만CGT)의 37.8%에 이르는 것이다. 건조능력 측면에서 보면 세계 5대 조선소 중 4개가 국내 조선소이고, 세계 10대 조선소에는 국내 조선소가 7개(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 한진중공업) 포함돼 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광활상대할 만한 하드웨어적인 발전에 비해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즉 이러한 국가경쟁력을 갖춘 산업부분에 있어 법적·제도적 밀반침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 크나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편적인 예로, 2004년도에 발생한 MSC Carla호에 대한 미국법원의 해사제조물책임 판결에서 극명하게 들어나고 있다. 구조변경작업을 수행한 우리나라 조선소에 대한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미국법원은 한국의 조선소에 대하여 미국 제조물 책임, 과실 및 묵시적 담보책임이론을 적용하여 엄격책임에 기한 화물 이해관계자의 모든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이는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대한 엄청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선산업에 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과제의 일부로써 우리나라와 미국의 해사제조물책임에 대한 국제사법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선박을 중심으로 한 해사제조물책임에 관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고 우리 국제사법상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미국 해사제조물책임에 관한 국제사법적 검토

2.1 미국의 해사제조물책임법

미국은 일찍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 및 활발한 소비자보호운동의 전개로 인해 풍부한 판례와 혁신적 법리를 창출함으로써 제조물책임론의 중심국이 되었다. 미국 해사제조물책임의 법리는 Restatement(Second) of Torts(1965)에 요약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① 피고가 제조물을 판매하거나 제조한 사실, ② 그 제조물이 피고의 지배를 벗어났을 때 불합리하게 위험하거나 하자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③ 그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제402A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결함제조물에 의한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 대하여 판매인이 엄격책임을 부담한다는 것과 결함의 종류를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경고상의 결함으로 나누고 있다. 둘째, 결함판단 기준으로는 소비자기대기준과 위험 효용성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의 법적 근거로는 묵시적 하자담보책임(implied warranty liability)·과실책임(negligence liability)·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들 수 있다. 초기에는 엄격책임이 연방해상법의 일부라고 생각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조물책임사건은 묵시적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초기의 판례는 묵시적 하자담보책임이 해사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었다. 일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간에 직접적 계약관련성이 없더라도 묵시적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묵시적 하자담보위반이 해사불법 행위관할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East River Steamship 사건 등에서 제조물책임 및 엄격책임이론을 해상법에 도입함으로써 이 같은 논쟁을 끝내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해사제조물책임사건이 해사관할에 속하는지 여부는 해사불법행위관할 원칙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제조물책임은 계약상 하자담보책임과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사불법행위개념은 제조물책임사건에만 적용되며, 반면에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계약법이 적용된다.

* 김진권(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E-mail:jinkwon@mail.hhu.ac.kr, Tel: 051)410-4234

2.2 미국의 해사제조물책임에 관한 해사관할

미국연방헌법 제3조 2항은 “사법권은 모든 해상사건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법영역의 전부에 대하여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것은 이례적이며, 그 이유는 건국당시 해상과 선박에 관하여 연방정부가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이 해사관할(admiralty jurisdiction)이 인정되는가 여부에 따라 그 사건 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즉, 어떤 사건에 대하여 해사관할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당사자의 시민권 및 분쟁의 가액의 대소에 상관없이 연방법원에서 처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연방 해상법(federal maritime law)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주법에 적용되는 많은 사항들이 해사관할에 속하는 해상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배심원 심리(jury trial)가 해상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반면, 해상사건에는 특이하게 책임제한절차가 있으며, 선박우선특권이 있다. 선박우선특권은 법정체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선박, 운임, 속구와 부속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담보권으로 대물소송으로 진행되며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변론없이 판결전에 선박을 압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해사소송의 특징을 정리하면, 해사관할이 전세계에 걸치고 해사사건에 적용되는 재판적 규정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이송,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 준거법, 법정선택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며, 항소에 관한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2.3 미국의 해사제조물책임에 관한 준거법

미국은 일찍이 실질법상 제조물책임론의 중심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촉법상으로도 제조물책임의 준거법결정에 있어서 타국에 비해 피해자(원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을 가지고 있으므로 州際的·국제적 사례에서 원고에 의해 미국법의 적용을 구하려는 소송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특정한 소송이 과실에 근거하는 경우 보통 불법행위지법주의에 의했으나 대부분의 州際的 제조물책임사건에 있어서는 상이한 과실요건들이 적어도 두 개 법역 이상에 걸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결과발생지의 법률에 의하도록 판시해왔다. 또한 담보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적 구성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지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으며 불법행위적 구성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지법 특히 결과발생지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실질법상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불법행위법의 엄격책임을 인정하는 판례의 확립으로 인하여 제조물책임에 관한 준거법결정에도 영향을 끼쳐 전통적인 준거법 선택원칙의 적용이 배제 혹은 극히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의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이론은 제조물책임의 준거법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미국의 학설 및 판례에 따르면, 결과발생지와 같은 엄격한 연결점은 제조물책임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흔히 있으며 또한 법률관계성질결정방식의 행사 그 자체가 법원의 해석 및 적용상 상당한 허구성과 재량에 의한 불안정성 등을 초래하기 쉽다는 점에서 계약이나 혹은 불법행위나 하는 법률관계성질결정방식에 의한 준거법결정은 제조물책임분야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법원은 제조물책임의 기초에 있는 법목적은 원고의 보호에 있다고 보아 이점을 제조물책임의 준거법결정에서도 고려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법의 우선적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고에게 유리한 법을 자동적으로 우선시켜서는 안되며 원고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이 제조사의 예측가능성과 제조사에 대한 공정성으로 보아 타당한가 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제조물책임사건에서 연결점으로는 제조사·판매자·취득자·손해발생지·원고의 주소지(상거소지)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의 연결점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법적 확실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자의적인 결과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각 판례별로 정의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준거법선택이론을 검토하고 있다.

3. 우리나라 해사제조물책임에 관한 국제사법적 검토

3.1 우리나라 해사제조물책임법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해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부분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제조물책임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이란 제품의 품질상 결함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입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생산자, 판매자 등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가 일반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각종 제품들이 생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제품들의 생산과정, 유통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비자 등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생산자 등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제조물책임인 것이다.

제조물책임이 발전하게 된 것은 계약책임으로서 보증책임만으로는 위험물이나 위험장비로부터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특히 미국에서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계약책임에 의한 보증책임이 주된 것이었으나, 이후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엄격책임의 법리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3.2 우리나라 제조물책임의 국제재판관할권

결국 원고인 피해자와 피고인 제조자의 이해관계 조절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법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정지 쇼핑(forum shopping)을 할 것이므로 제조자는 어느 법원에 제소될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국제거래가 주를 이루는 조선산업에서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만 유리하게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피해자의 보호에 추가하여 제조자에게는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물책임의 재판관할은 불법행위 재판관할과 상당한 차이점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이론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의 특별한 사정 이론과는 상이하며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아닌 조리에 의한 판결로 해석된다.

오늘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대형화 및 다양화는 특히 제조물책임소송의 본격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확대된 손해결과의 발생이라는 현상에서 과연 불법행위로서의 가해행위와 결과발생지 모든 곳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 불법행위란 구체적으로 가해행위인 상품제조지와 결과발생지인 사고발생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는 하나, 결과발생지에 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상품의 유통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나라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특히 선박과 같이 운용에 따른 공간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해사제조물의 경우에 더욱더 그러하다. 즉 선박이 그 결함에 의해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지역은 제조자인 조선업자나 구매자인 선박소유자에게 있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나라라 볼 수 없는 우연적인 장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재판관할과는 별개의 법률관계성질결정을 통하여 조리에 의한 재판관할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 경우 제조물책임의 재판관할에 대한 우선적 고려요소는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에 비추어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시되며 제조자의 예측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형평성을 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 입증, 증거수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당사자 및 분쟁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는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3 우리나라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우리나라는 국제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결정문제에 관하여 입법·학설 및 판례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제조물책임소송에 따른 영향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준거법 결정문제를 언급하는 학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제조물책임에 관한 성질결정에 있어 대체로 이를 계약책임으로 보아 국제사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우리 국제사법은 불법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불법행위지법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지법원칙을 채택하면서도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공통의 속인법(제32조 제2항), 종속적 연결(동조 제3항)과 법정지법의 사후적 합의(제33조)이다.

공통의 속인법주의는 불법행위 당시 동일국가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 특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종속적 연결이론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것으로, 예컨대 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가 동시에 계약관계를 침해하는 때에는 불법행위와 함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데, 이 경우 행위지원칙에 따를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이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외국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손해배상액의 제한을 두고 있다(제32조 제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사후적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자치원칙을 허용하고 그에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정지법의 사후적 합의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제33조).

그러므로 우리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연결점 및 조항을 순차적으로 보면, 우선 제8조의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에 따라 준거법 지정의 예외로써 준거법 지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그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를 것이며, 다음으로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 그 다음으로 종속적 연결과 공통의 속인법의 순서대로 따를 것이다.

항상 양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는 대립된다. 즉 제조자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해당 물품의 제조지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일사안에 대한 소송의 단일화, 증거 제출 및 조사 편리한 곳, 자국의 법 적용 이익 적용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유리의 원칙 도입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동정이 가해자에 대한 동정보다 크다”라고 하는 법언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유리한 준거법 지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제조물책임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자가 생산하여 시장에 내놓은 생산물의 숨겨진 결함 때문에 그 최종적인 매수인, 이용자 등이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 제조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이므로 경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가장 밀접한 관련 국가의 법을 지정하기 위하여 제조물 책임을 특수한 불법행위로 보아 법률혼결의 경우로서 조리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리의 내용은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예측가능성의 확보라는 요소를 중심에 두고 판단되며, 제조물 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협약에서 채택된 네 가지 연결점, 즉 피해자의 상거소지, 가해자(제조자)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제조물취득지, 사고발생지(침해적 사실발생지)를 단계적으로 결합시켜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어

미국에서 해사제조물 책임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한국의 제조자는 유효한 재판관할의 합의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미국의 재판관할법에 의하여 재판관할 유무 및 준거법 지정을 판단받게 됨을 의미하므로 재판관할부존재 및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따른 항변 등을 통하여 재판관할권을 한국의 제조자에게 유리한 곳, 즉 제조지로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도 비록 미국의 법원이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법의 우선적 적용을 긍정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유리한 법을 자동적으로 우선시켜서는 안

되며 원고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이 제조자의 예측가능성과 제조자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의 제조물 책임사건에서 제시되는 연결점인 제조자·판매자·취득자·손해발생자·원고의 주소지(상거소지) 등에 대한 고려가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제사법상 제조물 책임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지정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고 해석론도 다양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도 있다. 물론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이나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측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석론적으로 재판관할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조물 책임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재판관할과는 별개의 법률관계성질결정을 통하여 조리에 의한 재판관할 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 경우 제조물 책임의 재판관할에 대한 우선적 고려요소는 제조물 책임법의 목적에 비추어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되 제조자의 예측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형평성을 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 입증, 증거수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당사자 및 분쟁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는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준거법 지정에 있어서도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제조물 책임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밀접한 관련 국가의 법을 지정하기 위하여 제조물 책임을 특수한 불법행위로 보아 법률혼결의 경우로서 조리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리의 내용은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예측가능성의 확보라는 요소를 중심에 두고 판단되며, 제조물 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협약에서 채택된 네 가지 연결점, 즉 피해자의 상거소지, 가해자(제조자)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제조물취득지, 사고발생지(침해적 사실발생지)를 단계적으로 결합시켜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